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41
----------	-----

2011년 7월 7 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 2011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1년 6월 15일

다. 상정일자 : 제2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2011년 7월 7일 상정)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서울특별시장)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의 전문성과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무처의 조직을 정비·보강하여 입법 및 예산심사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무처 조직 중 정책연구실을 삭제하고, 입법담당관과 예산정책담당관을 신설함(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 : 윤 병 국)

검토요지

- 본 안건은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무처 조직 중 정책연구실을 폐지하고, 각종 조례안 검토 등 입법기능을 담당하는 입법담당관과 예산 및 기금운영을 포함한 사업분석 등을 담당하는 예산정책담당관을 신설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제안되었음.
- 먼저 본 개정안에서 폐지하기로 한 정책연구실은 의원 입법지원 및 정책평가·분석을 통한 정책대안 제시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2004년 처음 설치되었으나, 전문인력의 부족과 기구의 규모로 인해 기능역 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었음.

○ 현재 서울시의회사무처는 2실 2담당관 11전문위원실을 두고 의원들을 보좌하고 있으나, 제8대 개원 후 의원발의건수가 집행부 제출건수를 넘어서는 등 입법지원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예산안 재의요구 및 예비비지출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도출되어 사무처의 입법기능과 예산심사기능 강화가 필요한 시점임.

○ 이런 측면에서 국회의 입법·정책지원 기능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바, 국회의 경우 국회내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 예산정책처, 국회 입법조사처 등의 조직을 설치하여 의원들을 보좌하는 바, 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및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예산정책처는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 관련사항 연구·분석·평가, 재정수반 법률안 등에 대한 소요비용 추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개정 조례안은 국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입법담당관과 예산정책담당관을 신설하여 서울시의회의 입법기능과 예산심사기능을 강화한다는 내용으로 시의적절한 사안이라 판단됨.

**※국회와 서울시의회 정책 입법기능 비교표(조직개편 후)**

	국 회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예산정책담당관	입법담당관
설치 근거	국회법 제22조의2	국회법 제22조의3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구성	1처 (차관급) 2실 1국 1관 18팀	1처 (차관급) 3실 1관 1실외관 14팀	1관 (4급) 2팀	1관 (4급) 2팀
정원	116명	101명	12명	12명
주요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안·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기금결산에 대한 연구 및 분석</li> <li>○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li> <li>○ 국가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의 분석 및 전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분석 및 회답</li> <li>○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연구 및 정보의 제공</li> <li>○ 입법 및 정책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및 보급</li> <li>○ 외국의 입법동향의 분석 및 정보의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업무지원</li> <li>○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연구 및 분석</li> <li>○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중·장기 재정소요 분석</li> <li>○ 지방재정운용의 분석 및 전망</li> <li>○ 국내외 재정·정책관련 제도에 대한 조사·연구, 정책연구위원회 운영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원 및 상임위원회에서 의뢰한 각종 조례안 법제심사 및 검토</li> <li>○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정안 지원</li> <li>○ 입법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및 분석</li> <li>○ 국내외 입법 동향 및 사례 등에 관한 조사·분석</li> <li>○ 지방의회 법제 및 운용에 관한 조사·연구</li> </ul>

○ 다만 동 신설조직을 담당하는 정원확보에 있어서 현재 4급 1명을 포함 총 5명을 증원하고 자체정원을 활용할 계획이나, 신설되는 두 조직의 정상적인 기능수행을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4급정원 1명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한 “과”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최소 단위인 12명의 정원이 고려되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정원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법령〉

###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직무) 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연구 및 분석
2.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3. 국가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의 분석 및 전망
4. 국가의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중·장기재정소요 분석
5. 국회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 및 분석

### 「국회입법조사처법」

제3조(직무) 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국회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분석 및 회답
2.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연구 및 정보의 제공
3. 입법 및 정책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및 보급
4. 국회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정보의 제공
5. 외국의 입법동향의 분석 및 정보의 제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④ 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시·도는 5급 4명 이상,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는 6급 4명 이상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 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1
----------	-----

제출년월일 : 2011년 6월 10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의 전문성과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무처의 조직을 정비·보강하여 입법 및 예산심사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사무처 조직 중 정책연구실을 삭제하고, 입법담당관과 예산정책담당관을 신설함(안 제4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1. 5. 31. ~ 6. 7.) 결과 :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직접 보좌하는”을 “보좌하는”으로 하고, “의사담당관 및 정책연구실”을 “의사담당관·입법담당관 및 예산정책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실·담당관의 설치) 처장을 <u>직접 보좌하는</u> 하부조직으로 공보실·의정담당관· <u>의사담당관</u> 및 <u>정책연구실</u> 을 둔다.	제4조(실·담당관의 설치) 처장을 <u>보좌하는</u> 하부조직으로 공보실·의정담당관· <u>의사담당관</u> · <u>입법담당관</u> 및 <u>예산정책담당관</u> 을 둔다.